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12.11,
타법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27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제 · 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신청서”로 한다.

제4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를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3,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9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 11 및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